

#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2일  
제출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개편(2023.1.16.)에 따른 부서명칭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, 실제 기관명칭에 맞춰 ‘의회사무국’을 ‘의회사무처’로 개정해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(입법담당관→법제담당관, 예산정책담당관→재정분석담당관) 변경 사항을 반영함(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)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에 맞춰 ‘의회사무국’을 ‘의회사무처’로 개정함(안 제6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
##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입법담당관”을 각각 “법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입법담당관”을 “법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예산정책담당관”을 “재정분석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예산정책담당”을 “재정분석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입법담당관”을 “법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입법담당관”을 “법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입법담당관”을 “법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입법담당관”을 각각 “법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의

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의회사무국”을 “의회사무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